## THE ORANGE BOOK

#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

**DUAL Pride & Way** 





### DUAL Pride: 윤리강령

본 강령은 품질경영과 내실경영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내장재 분야 선도기업을 지향하는 ㈜두올이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제시하는 기본가치이자 원칙이다.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, 공정한 경쟁의 정착과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## 총 칙

- 1. 본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.
- 2. 윤리경영실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윤리경영 제도·시스템의 입안, 조정, 운영, 감독, 교육, 홍보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.
- 3. 윤리경영실은 비윤리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, 회사 내규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.

#### 제 1 조 [고객에 대한 책임]

우리는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고,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.

- 1.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,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2.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3.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.

#### 제 2 조 [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]

우리는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
- 1. 합리적 투자와 건실한 경영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높인다.
- 2. 투자자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, 투자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한다.

#### 제 3 조 [투명경영의 추구]

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에 충실하고,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.

- 1.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,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.
- 2.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이익이나 청탁도 받지 않는다.

3. 주요 경영사항을 성실히 공시하고,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·관리한다.

#### 제 4 조 [상생경영의 추구]

우리는 협력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사업 관계를 맺고,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
- 1.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목적에 맞는 협력회사를 선정한다.
- 2. 협력회사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 협력회사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, 함께 발전해 나간다.

#### 제 5 조 [건전한 조직문화 조성]

우리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,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책임을 진다.
- 2. 모든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, 국적·인종·성별·종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.
- 3.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.
- 4. 회사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
#### 제 6 조 [국가와 사회에 기여]

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,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
- 1. 안정적 고용창출, 양질의 제품 제공, 성실납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.
- 2.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.
- 3. 다방면의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#### 제 7 조 [윤리강령 준수]

우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.

- 1.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.
- 2. 개인이 회사를 대표함을 인지하여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.

#### 부 칙

1. 2020년 5월 15일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다.

### DUAL Way: 실천지침

#### 제 1 장 총칙

#### 제 1 조 [적용범위]

본 규정은 ㈜두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
#### 제 2 조 [방침]

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.

지침의 해석과 관련해 의문사항 및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자문을 구하고 결정에 따른다.

#### 제 3 조 [용어의 정의]

- 1. 금품: 현금, 유가증권, 부동산, 숙박권, 회원권, 물품 등 일체의 물질적, 재산적 이익
- 2. 향응, 접대: 다과, 식사, 음주, 오락 등의 수혜
- 3. 편의: 교통, 숙박, 관광안내, 행사 등 금품 또는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각종 수혜
- 4.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/외의 개인 또는 그룹(임직원, 주주, 고객, 협력사 등)
- 5. 부정청탁: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, 부여 받은 지위 및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야 한다.
- 6. 공금횡령/유용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/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
- 7. 기밀유출: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- 8. 성희롱: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
- 9. 통상적 수준: 장소 및 목적, 참석자 범위 및 지위,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었을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

#### 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
#### 제 4 조 [부정청탁]

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.

- ①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금지
-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금지
- ③ 구매 및 각종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금지
- ④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금지

#### 제 5 조 [금품수수]

- 1.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(授受)하거나,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 단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  - 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·행사용 기념품이나 할인 혜택 등
  - ② 상위 직책자가 하위 임직원에게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
  - ③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경조 사유가 명확한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, 선물 등
- 2. 부득이 금전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하고,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. 이 때 무통장 입금표 사본 등의 처리 결과를 반드시 증빙으로 첨부한다.

#### 제 6 조 [향응, 접대]

- 1.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를 수수(授受)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  - 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통상적 수준의 식사
  - ② 대표이사가 직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
- 2. 협력사 임직원과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거나 협력사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한다. 단, 불가피하게 협력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직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.

3. 협력사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및 술자리, 유흥·퇴폐업소 출입 등은 금지한다.

#### 제 7 조 [편의, 찬조, 비용부담]

- 1. 이해관계자에게 편의, 협찬 및 찬조를 수수(授受)하거나,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
- 2.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 또는 동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보하되 찬조금 또는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- 3.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해야 한다. 행사의 진행 중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
- 4.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정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

#### 제 8 조 [기타 금전적 혜택]

- 1.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2. 이해관계자에게 채무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, 이자 등)에 대한 면제, 상환, 보증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도 안되며, 행위시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.
- 3.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,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.

#### 제 9 조 [배우자, 친인척]

임직원은 배우자, 친인척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#### 제 3 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

#### 제 10 조 [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]

- 1.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윤리경영실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2. 본인 및 배우자,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협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·감사·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.

#### 제 11 조 [협력사에 대한 투자]

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사(계열회사 제외)의 주식, 채권 등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는 금지한다.

#### 제 12 조 [협력사 선정]

특정 협력회사를 선정 또는 기피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되다.

- ①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 대상을 한정하는 행위 금지
- ②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금지
- ③ 기존 회사의 보호 또는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회사를 옹호하는 행위 금지

#### 제 13 조 [회사 외부 활동]

- 1.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.
- 2. 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·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 검토·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 4 장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

#### 제 14 조 [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]

- 1.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, 공금 유용, 기물 유출,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2.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
- 3.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, 기술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지 않는다

#### 제 15 조 [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]

- 1.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,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2. 비용은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 특히,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·장소·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결제, 위장거래, 타인대여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## 제 5 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행위

#### 제 16 조 [업무태만 및 근태불량]

업무태만, 근태불량, 관리감독 소홀, 불합리한 업무처리, 월권 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 17 조 [문서의 조작 및 허위보고]

- 1. 회사에서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의 계수와 내용은 정확하고,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- 2.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, 계수 등을 은폐·축소·과장·누락·지연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 18 조 [임직원간 부당 행위]

임직원간 차별대우, 부당한 업무지시, 직위·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, 폭언, 폭행, 괴롭힘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 19조 [성희롱]

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농담,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
- ② 회식, 워크숍,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
- ③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

## "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회사의 명예를 만든다."